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8.1. 제정 및 시행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음

에 따라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빈번한 조례 개정의 부담도 제거하도록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명확성 및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불이익조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조와 호만 표시하여 빈번한 개정 부담을 제거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자구 수정 등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비된 규정에 따라 시민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